

일반공급 안내

일반공급 1순위 청약 Check Point

1 세대주,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, 세대원 등(동거인, 외국인)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. 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.
2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아파트의 공급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거주자이나, 경쟁 발생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.
3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
4 재당첨 제한 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과거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.)

일반공급 청약 순위 안내

구분	비고
1순위	주택청약종합저축
	청약예금
	청약부금 (85㎡ 이하 청약가능)
2순위	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

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분 중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

청약 예치금 기준금액

구분(전용면적)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경기도	이문 아이파크 자이 청약가능 주택형
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20㎡, 41㎡, 59㎡, 84㎡
102㎡ 이하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	20㎡, 41㎡, 59㎡, 84㎡, 99㎡
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	모든 면적 가능
모든 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	

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 요건

청약저축 → 청약예금 전환	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(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)
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	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(큰 주택규모 충족 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)
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	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
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	청약접수일까지 충족

일반공급 1순위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자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) [동거인 및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분 중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 ※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,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. ※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중 국방부(국군복지단)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순위 :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,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,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용면적 85㎡ 이하 : 일반공급 세대수의 40%를 가점제로, 나머지 60%는 추첨제 적용 - 전용면적 85㎡ 초과 :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%를 추첨제 적용 ※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,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% : 무주택세대구성원 2. 나머지 25%의 주택(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) :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: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※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 하여야 합니다. 2순위 :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.

※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,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